

제815호

무주 공보

2026. 7. 1.(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무주군 공고 제2026-751호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신선식품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 교통약자,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 전자우편: mhp70@korea.kr

- 팩스: 063-320-2838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063-320-28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 조례명 :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화 지역에 차량, 이동 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사업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관련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식료품 배송 체계 구축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 육성)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른 무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